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1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김남희·김선민·송재봉

김정호 • 박상혁 • 이연희

장종태 · 남인순 · 이수진

김 윤ㆍ정성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, 성희롱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,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성폭력범죄, 성희롱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7조제8항).

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3.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6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청심사를

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	제67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
및 심사의 청구) ① ~ ⑦ (생	및 심사의 청구) ① ~ ⑦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
	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
	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
	청심사청구 사실 및 심사위원
	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
	<u>하여야 한다.</u>
	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
	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
	<u>성폭력범죄</u>
	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
	2호에 따른 성희롱
	3.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
	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
	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
	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
	<u>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</u>
	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
	<u>정하는 행위</u>
<u>⑧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